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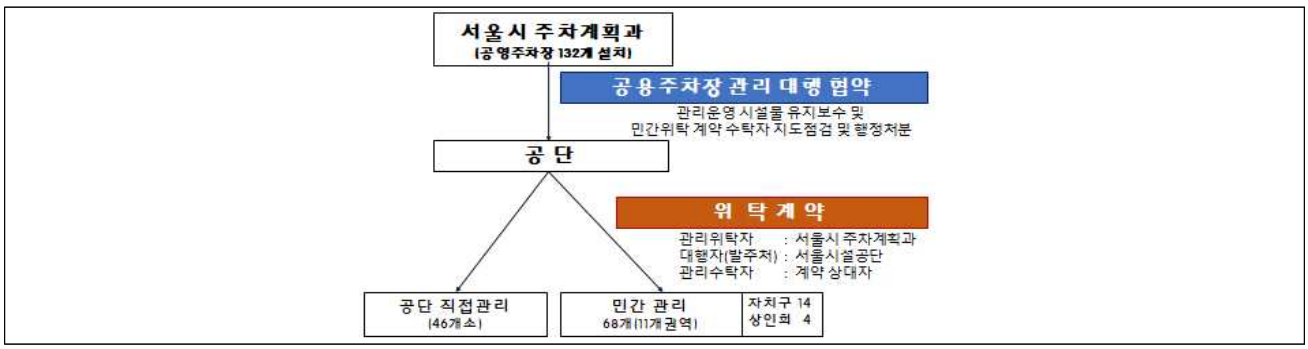
제　　목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이하 “주차계획과”라고 한다.)는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1]의 설치 및 폐지) 및 제12조(노외주차장[2]의 설치 등)에 따라 132개(노상 68, 노외 64)[3]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주차장별로 관리수탁자[4]를 선정하였다.

[표 1] 주차계획과 설치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주차계획과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6. 11. 1. ~ 2021. 12. 31.(5년간)까지 위 공영주차장 132개 중 46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86개〔민간 68(11개 권역), 자치구 14, 상인회 4〕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하여금 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 수탁자의 계약내용 위반 등에 대해 조사 및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임시폐쇄하거나 행정처분하는

---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출처 :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가.]

2)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출처 :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나]

3) 2020. 10. 30.기준

4) ‘관리수탁자’란 주자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1.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일부 관리수탁자 수입금 축소신고 방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계획과(市)와 공단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4조(재산의 관리) 및 제12조(협약의 해지)에 의하면, “공단”은 “시(市)”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 주차계획과(市)의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관리수탁자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7조(요금징수 방법)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운영·관리) 제6항, 제21조(운영실적 관리 및 제출)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를 교통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여유주차면, 정기권, 수입금 등 주차정보가 실시간 수집관리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제공한 주차관리시스템[5](스마트폰, 관제기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탁관리 기간 중 주차장별 운영실적(주차장 구획수, 수입금, 손익계산서, 급여 현황, 소득신고서, 주차실적 보고서 등)을 익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처리 흐름도

운전자	차량 입차		차량 출차
계약상대자 (주차 관리원)	스마트폰 앱 이용 입차 처리 (차량번호 사진을 찍어 등록)	➠	스마트폰 앱 이용 출차 처리 - 카드 결제 : 공단 제공 카드단말기 사용 결제 - 현금 결제 : 현금 수령 후 공단 제공한 단말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발주기관 (공단)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상황 정보 수집됨 (입차시간, 차량번호 등이 표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출차 상황 정보가 수집됨 (출차시간, 주차요금, 결제유형 등이 표시)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5) 공단 14층에 설치된 주차통합센터에서 차량 입출차 시간, 요금 징수내역 등 주차관련 정보가 실시간 수집되도록 구축한 시스템

그리고 제20조(지도·감독) 및 제22조(행정처분)에 의하면, 공단은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단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시설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 시설을 임시 폐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 축소신고 등으로 인하여 차기년도 위탁료 예정가격이 부적정하게 산출되어 시 세외수입 감소로 재정누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수탁자가 매월 제출하는 주차 수입금에 대해 소득 증빙자료[6]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주차 수입금 축소가 의심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86개 중 자치구(14개) 및 상인회(4개)를 제외한 아래 〔표 3〕의 11개 권역 68개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에 대해 2016. 11. 1. ~ 2020. 9. 30.까지 관리수탁자가 매월 제출한 주차수입금과 주차관리시스템상의 주차수입금을 대조하여 보았다.

[표 3]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현황 및 위탁료(2016. 11. 1. ∽ 2020. 12. 31.)

권역별	계	강 남 권						강 북 권				기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주차장 수	68	8	5	8	7	8	2	7	7	8	7	1
구획수	3,893	484	154	414	339	241	698	183	324	396	625	35
위탁료 (단위: 백만 원)	소계	2,566	587	2,292	2,300	1,086	2,477	2,266	6,355	4,133	4,325	122
	본계약[7]	1,788	523	1,626	1,788	865	1,730	1,889	4,737	2,754	3,138	97
	갱신계약[8]	778	64	666	512	221	747	377	1,618	1,379	1,187	25
관리수탁자	-	[redacted]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아래 〔표 4〕와 같이 관리수탁자가 공단에 매월 제출한 주차장별 주차 수입금의 총 합계는 399억 원이나 주차관리시스템상의 주차 수입금은 306

6) 손익계산서, 소득신고서 등
7) 위탁기간 : 2016. 11. 1. ~ 2019. 10. 31.
8) 위탁기간 : 2019. 11. 1. ~ 2020. 12. 31.

억 원으로 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주차수입금과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수입금이 9,259 백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차관리시스템의 주차수입금과 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주차수입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권역별	합계	강 남 권						강 북 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①주차관리 시스템상 주차수입	30,686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②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주차수입	39,945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③ 차이 (②-①)	9,259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차장별 소득신고여부[9]	-	타 사업장 합산 신고 (검증불가)	관련자료 미제출 (검증불가)	타 사업장 합산 신고 (검증불가)	타 사업장 합산 신고 (검증불가)	관련자료 미제출 (검증불가)	관련자료 미제출 (검증불가)	타 사업장 합산 신고 (검증불가)	타 사업장 합산 신고 (검증불가)	관련자료 미제출 (검증불가)	관련자료 미제출 (검증불가)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원인 파악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빙 자료를 통하여 주차장별 주차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감독자인 공단을 통해 관리수탁자에게 '소득신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내용[10]과 달리 타 사업장과 합산한 자료만 제출하여 주차장별 정확한 주차수입금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현장조사 자료와 주차관리시스템상 차이가 있는 [redacted] 등 10개 주차장을 샘플 선정하여 2020. 11. 2.(월) ~ 11. 7.(토)까지 주차 구획선 내에 설치된 차량인식 감지기[11]를 이용하여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시간 및 수입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차량인식 감지기 상에 주차된 시간은 총 409,855분이나 주차관리시스템상에는 146,662분만 등록되어 263,193분이 주차관리시스템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요금 및 관리수탁자 주차수입금 신고내용 비교

9) 감사기간 중 관리수탁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여 검토함

10) 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소득신고서, 손익계산서는 주차장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11) 차량인식 감지기란 주차구획선내에 설치된 센서로서, 차량이 입·출차하면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여 입·출차 상태를 "서울주차정보안내"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이때 차량의 입·출차 시간이 기록됨

권역별		주차구획수(면)	조사기간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요금 징수 누락 여부 확인			관리수탁자 주차수입금 축소 신고여부 확인		
				①차량인식 감지기상 주차된 시간(분)	②주차관리 시스템상 주차된시간 (분)	③주차관리 시스템상 등록하지않은 시간(②-①) (분)	④차량인식 감지기상 주차된 시간으로 주차수입(원)	⑤관리수탁자 제출한 주차수입	⑥주차수입 차이 (⑤-④)
합계				409,855	146,662	-263,193	19,305,030	9,699,800	-9,605,230
강남1	[redacted]	[redacted]	11. 3. ~ 7.	49,231	5,168	-44,063	1,470,690	134,000	-1,336,690
	[redacted]	[redacted]	11. 3. ~ 7.	19,269		-19,269	578,070	140,700	-437,370
강남2	[redacted]	[redacted]	11. 2 ~ 7.	38,143	21,910	-16,233	1,026,390	1,153,500	127,110
	[redacted]	[redacted]	11. 3. ~ 7.	59,012	14,346	-44,666	2,619,400	1,408,200	-1,211,200
	[redacted]	[redacted]	11. 2 ~ 7.	37,231	11,581	-25,650	1,666,900	1,636,600	-30,300
강남4	[redacted]	[redacted]	11.3. ~ 7.	60,450	15,514	-44,936	2,968,300	563,300	-2,405,000
	[redacted]	[redacted]	11. 3 ~ 7.	59,812	39,918	-19,894	5,131,200	3,098,000	-2,033,200
	[redacted]	[redacted]	11. 2 ~ 7.	40,491	2,329	-38,162	2,003,780	194,800	-1,808,980
	[redacted]	[redacted]	11. 2 ~ 7.	26,947	20,878	-6,069	1,052,250	640,800	-411,450
강북1	[redacted]	[redacted]	11. 3. ~ 7.	19,269	15,018	-4,251	788,050	729,900	-58,150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차량인식 감지기상 주차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수입금을 계산[12]한 결과 19,305,030원이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단에 제출한 주차수입금은 9,699,800원으로 9,605,230원의 주차수입금의 차이가 있어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 수입금이 징수 누락되고 민간위탁 관리수탁자들의 주차수입금 축소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20. 11. 10. 감사요원 1명, 공단 패트롤 1명 및 관련업무 직원 1명 등 3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일부 관리수탁자들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월 정기권[13] 및 1일 주차권[14]을 판매·징수 할 수 없는 주차장임에도 이를 현금 및 계좌이체로 판매·징수하였고, 이런 차량들은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수입금을 징수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장애인,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 차량의 주차요금은 반영되지 않은 값으로,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수입금 임
13) 노상주차장 1급~3급지는 주간 및 야간, 노상주차장 4급지 야간에는 월정기권 징수 불가
14) 노상주차장 1급~5급지 주간에는 1일 주차권 징수 불가

[표 6]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실태 현장조사 결과(2020.11.10.)

권역별		강남1		강남2			강남4				강북1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주차 구획수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징수 위반 사례	1일 주차권 징수 위반[15]	42 (일/1만원)					1				
	월 정기권 징수 위반[16]		7 (월/13 ~ 15만원)	3 (월/ 15만원)	24 (월/7 ~ 12만원)		10 (월/10 ~ 15만원)	3 (월/25 ~ 33만원)	32 (월/12 ~ 36만원)	1 (월/15만원)	-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등록이 안 된 차량[17]						17		9		3	-

자료 : 2020. 11. 10.(화) 현장 점검결과

특히 [redacted] 공영주차장의 "영업소 일별 수익현황('20. 8월~10월)"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관리시스템과 주차수입금 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이 관리수탁자는 3개월간 실 주차수입금은 18,449,700원 징수하였음에도 공단에 제출한 주차수입금은 2,712,300원만 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어 15,737,400원을 축소 신고하였다.

[표 7] [redacted]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실태 조사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2020. 8월	2020. 9월	2020. 10월
① **실제 주차수입**	**18,449,700**	**6,130,300**	**6,159,900**	**6,159,500**
② 공단에 제출한 주차수입	2,712,300	1,100,300	836,300	775,700
③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수입	1,025,700	310,300	339,900	375,500
④ 축소하여 신고한 주차수입(①-②)	15,737,400	5,030,000	5,323,600	5,383,800
⑤ 주차관리시스템상 누락한 주차수입(①-③)	17,424,000	5,820,000	5,820,000	5,784,000

자료 : 2020. 11. 10.(화) 현장 점검결과 자료 재구성

아울러 주차관리시스템상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금액은 3개월간 1,025,700원의 주차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 주차수입금은 18,449,7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17,424,000원을 징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주차관리원으로부터 1일 주차권 판매 확인서 징구(2020. 11. 10.)
16)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월 주차권 판매 확인서 징구(2020. 11. 10.)
17) 현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나, 주차관리시스템상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는 차량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들이 공단에서 제공한 IT기기(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수입금을 축소 신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아무런 검증 없이 위탁료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공단은 계약기간이 종료(2020. 12. 31.) 되는 민간 위탁관리 주차장의 새로운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표 8〕 과 같이 10개 권역별로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2020. 11월 입찰 공고[18]하였다.

[표 8] 2021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해 산정한 위탁료 예정가격

(단위:백만 원)

권역별	강 남 권						강 북 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주차장수	8	6	8	7	8	2	7	8	6	6
①년간 평균 수입액[19]	[redacted]									
②예상 매출액[20]	[redacted]									
③부가세 (②×10%)	[redacted]									
④경비등 지출	[redacted]									
⑤초과이익 (②-③-④)	[redacted]									
⑥위탁료 (초과이익*110%)	429	100	538	75	132	297	261	1,775	1,080	664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1]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4항의 〈별표 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위탁료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누수 등의 우려가 없도록 민간위탁 관리수탁자가 제출한 주차수입금의 축

18) 국가 지정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에 2020.11.13.일 입찰 공고하였고, 11. 23일 개찰 완료함.
19) 2017.7. ~ 2020.5. 까지 관리수탁자가 매월 공단에 제출한 주차수입금 기준으로 년 평균 수입액을 구함
20) "년간 평균 수입액"에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
2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 12. 15., 2019. 12. 9. 일부개정.)

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들이 부실하게 축소 신고한 '주차장별 수입금' 자료를 가지고 2021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연간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 후·입찰 공고하였다.

이에 민간위탁운영 공영주차장 68개 중 감사기간 중 현장조사 자료와 주차관리시스템상 차이가 있는 [redacted] 등 10개 주차장을 샘플 선정하여, 2020. 11. 2.(월) ~ 11. 7.(토)까지 주차 구획선 내에 설치된 차량인식 감지기를 이용하여 1주일간 수입금을 근거로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2021년 입찰 공고된 년간 위탁료 예정가격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9〕과 같이 위탁료 예정가격이 연간 약 299백만원이 적게 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입찰 공고된[22] 위탁료와 차량인식 감지기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위탁료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금번 입찰공고시 산정한 위탁료			차량인식 감지기 의해 산정된 위탁료(추정)[23]		
	①예상 매출액	②운영비	③위탁료 (①-②)	④예상 매출액	⑤운영비	⑥위탁료 (④-⑤)
합계	**336,608**	**324,418**	**13,410**	**608,753**	**324,418**	**312,768**
[redacted]	53,236	29,817	25,761	54,887	29,817	27,577
[redacted]	15,274	43,107	-30,615	28,854	43,107	-15,677
[redacted]	17,143	27,311	-11,184	38,305	27,311	12,093
[redacted]	25,597	28,112	-2,765	101,775	28,112	81,029
[redacted]	26,615	27,480	-951	86,743	27,480	65,188
[redacted]	43,267	29,659	14,968	79,474	29,659	54,796
[redacted]	73,165	60,619	13,800	90,218	60,619	32,559
[redacted]	26,037	22,494	3,896	74,783	22,494	57,517
[redacted]	24,539	28,106	-3,923	26,069	28,106	-2,240
[redacted]	31,735	27,713	4,423	27,645	27,713	-74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공단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료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음에도, 주차계획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

22) 2021. 1. 1.월부터 민간위탁을 위해 온비드에 공고된 위탁료(공고기간 : 2020.11.13. ~ 11.20)

23) 2020.11.2.~11.7일까지 차량인식 감지기를 활용한 주차구획서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간을 년간으로 환산하여 년간 평균수입액을 산정한 후 위탁료를 계산한 값으로, 이는 주차요금 감면 등이 고려가 되지 않은 **추정값**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법은 자칫 부정부패를 유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시(市) 세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누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를 위해서 2016. 11월 국민권익위원 권고 등을 참고하여 주차장 관련 조례상에 위탁료 예정가격 산출기준을 명시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인식 감지기 또는 현지 출장하여 일정시간(3~4시간) 동안의 차량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입금 파악·분석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탁료 산출 사례(○○군)

가. 산출방법 : ○○군 현장조사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 분석
① 현장조사(군청) : 년 2회(7일/회)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3~4시간) 동안의 차량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입금 파악 · 분석
② 제출자료(수탁기관) :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 수입근거(시간당 주차요금, 월정 주차요금 등), 지출근거(인건비, 수탁료,운영비, 사업장관리비, 제경비 등)
나. 결과분석 : 현장조사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주차장 여건과 관리 측면에서 위탁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
다. 위탁료 산출 : 평균치 수입금(현장조사 2회 및 제출자료의 평균) - 해당연도 지출액 × 비율
※ 2016년 7월 권익위 서면조사시 제출된 ○○군의 "2015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위 · 수탁 관리계약 추진계획" 을 기초로 재구성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 일부 내용 발취

아울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4항에 따른 〔별표 4〕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관리수탁자 선정시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적 제한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은 위탁료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 실적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일반 경쟁 입찰과 실적제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비교한 결과, 일반 경쟁 입찰이 참여업체 수 및 낙찰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적제한 입찰보다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한 위탁료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실적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의 낙찰률 비교]

◦ 2016년(**위탁기간 '16. 11. 1. ~ '20. 12. 31.**)

‣ 9개 권역 '실적제한 입찰' : 낙찰률 145.7%(참여업체 : 평균 3.3개), 1개 권역 : 수의계약

◦ 2020년(**위탁기간 '21. 1. 1. ~ '23. 12. 31.**)

‣ 5개 권역(3억 이상) '실적제한' 입찰 : 낙찰률 183.9%(참여업체 : 평균 4.8개)

‣ 5개 권역(3억 미만) '일반경쟁' 입찰 : 낙찰률 285.7%(참여업체 : 평균 10.8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관리수탁자가 매월 제출하는 주차수입금과 주차관리시스템상 주차수입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관리시스템상에 월 정기권 수입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차수입금이 축소된 상태에서 위탁료 예정가격을 산정하여도 최종 결정되는 위탁료는 낙찰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 누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은 차이가 발생하는 주차수입금 92억 원 중에서 '집계가 되지 않은 월 정기권'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추정만하고 있고, 위탁료 산정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면, 낙찰률이 반영되는 최종 위탁료 또한 부실하게 확정되어 재정 누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주차계획과에서는 "공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시 공단의 주차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주차계획과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연계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개선 및 재위탁 계획」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운영수익금 확보를 위하여 변칙운영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울러 2019년도 "주차시설(주차장, 부대시설) 대행사무 점검 계획"에는 "수익금 관리 적정 여부"를 주요 점검사항으로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시 공단의 주차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에 따라 대행사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및 민간위탁 관리수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아울러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정 누수 우려 등을 초래한 관련자에게는 귀 공단의 「인사규정」 제47조의3(주의·경고) 등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이하 “주차계획과”라고 한다.)는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24]의 설치 및 폐지) 및 제12조(노외주차장[25]의 설치 등)에 따라 132개(노상 68, 노외 64)[26]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주차장별로 관리수탁자[27]를 선정하였다.

[표 1] 주차계획과 설치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관리수탁자)

관리 구분	총계	관리대행	위탁			
관리수탁자		서울시설공단	소 계	민간 관리	자치구 관리	상인회 관리
개소	132	46	86	68	14	4
면수	17,355	12,522	4,833	3,893	874	66

주 : ‘공단’ 은 위탁 관리주차장 86개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과 책임이 있음
자료 : 공단제출 자료 재구성

아울러 주차계획과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6. 11. 1.부터 2021. 12. 31.(5년간)까지 위 공영주차장 132개 중 46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단에서 직접 대행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86개〔민간 68(11개 권역), 자치구 14, 상인회 4〕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법률 및 계약내용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임시폐쇄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

24)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가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5)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나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6) 2020. 10. 30.기준

27) ‘관리수탁자’란? 주자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공단(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들에게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하고, 주차패트롤 담당자 3명을 지정하여 분기별 순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등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계획과(市)와 공단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4조(재산의 관리)의하면, "공단"은 "시(市)"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 주차계획과(市)의 계약업무를 대행[28]하여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 탁 관리계약서' 제20조(지도·감독) 및 제22조(행정처분)에 의하면, 공단은 지도·감독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상대자"가 수탁관리 계약내용 위반 및 지시사항 불이행 시에는 본 계약서 〔별첨 4〕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별첨 4] 주요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근거	행정처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주차시설의 용도외 사용 ○ T-money등 신용카드시스템 및 주차요금 단말기(스마트폰) 미사용, 영수증 미교부 ○ 주차요금징수 비대상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 ○ 지시사항 및 지적사항의 미조치 및 미준수	계약서	시정지시	경고 (2차 시정지시)	계약해지	
○ 민원유발(동일 민원에 대한 사항)		시정지시	경고 (2차 시정지시)	경고 (3차 시정지시)	계약해지
○ 기타 관련법령 위반(조도, 노상 1~3급지 주차장 월 정기권 운영 등)		주의	경고	계약해지	

자료 : 민간운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계약서 '별첨4' 행정처분기준 일부 발췌 재구성

28) 관리위탁자(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대행자(발주기관) : 공단이사장, 관리수탁자(계약상대자) : 민간위탁 수탁자

따라서 공단은 계약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계약상대자”가 수탁관리 계약내용 위반 및 지시사항 불이행 시에는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0. 10. 14. ~ 11. 26.) 중 아래 〔표 3〕의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68개에 대한 2016. 11. 1. ~ 2020. 10. 31.현재까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결과,

[표 3] 민간관리 위탁 주차장 계약현황(2016. 11. 1. ∽ 2020. 12. 31.)

권역별	계	강 남 권						강 북 권				기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주차장수	68	8	5	8	7	8	2	7	7	8	7	1
구획수	3,893	484	154	414	339	241	698	183	324	396	625	35
위탁료 (백만원)	소계	2,566	587	2,292	2,300	1,086	2,477	2,266	6,355	4,133	4,325	122
	본 계약[29]	1,788	523	1,626	1,788	865	1,730	1,889	4,737	2,754	3,138	97
	갱신계약[30]	778	64	666	512	221	747	377	1,618	1,379	1,187	25
관리수탁자	-	[redacted]										

자료: 서울시설공단제출 자료 재구성([별첨 1] 민간 위탁관리 주차장 계약 세부현황)

공단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총135회의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3차례 행정처분(주의2, 시정 1)[31]만 실시하는 등 관리수탁자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29) 본 계약 기간 : 2016. 11. 1. ~ 2019. 10. 31.

30) 갱신 계약 기간 : 2019. 11. 1. ~ 2020. 12. 31.

31) [redacted] : 월정기권 판매 등 주의(‘18. 4.), [redacted] : 월정기권 판매등 주의(‘18. 8.), [redacted] : 불친절 관련시정지시(‘18. 10.)

[표 4] 민간 관리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계약위반 현황('16. 11. 1. ~ '20. 10. 31.현재)

(단위 : 횟수)

구분			강 남 권						강 북 권				기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행정처분대상	소계	행정처분기준	3	1	1	7	5	0	45	40	30	2	1
	노상(1~3급지)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	1			4			3		2	1	
	주차요금 단말기 미사용 (수기 영수증 발급)	1회 시정지시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	1				1		14	14	8		
	주차요금징수 비대상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 (이중주차)	1회 시정지시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			1	2	2		26	22	15	1	
	주차시설의 용도외사용 (무단점검)	1회 시정지시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	1	1		1	2		2	4	5		1

자료 : 서울시설공단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공단은 분기별 패트롤 활동을 통해 적발사항은 공문을 통하여 시정 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행정처분 조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시정계도 위주로 관리하였다라고 답변하면서, 동시에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향후에는 계약서상 패널티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패널티 부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보험 가입 업무 관리 소홀

공단에서 주차계획과(市)의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20조(지도·감독) 및 제27조(책임부담 및 보험)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및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보안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임시 폐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위 「공영주차장 위·수 탁 관리계약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보험 및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가입시에는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68개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5〕 와 같이 권역별 일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상대자가 일정 기간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표 5]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보험 미가입 현황(기간 : '16.11.1 ~20.12.31.)

권역별	강 남 권						강 북 권				기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가입여부 확인	2~3회 기간만 가입	5회 가입 완료	3회 기간만 가입	1~4회 기간만 가입	1회 기간만 가입	5회 가입 완료	4회 기간만 가입	4회 기간만 가입	1회 기간만 가입	5회 가입 완료	가입 여부 미확인

자료 : 서울시설공단제출 자료 재구성

그러함에도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는 등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업무 대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공단은 주차장내 사고 발생 시 수탁업체의 보상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건은 없으나,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금번에 신규로 선정된 관리수탁자에게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건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노동 관계법령 미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및 제2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르면, 사용자[32]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33]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34]에 해당될 시에는 미리 정산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서 주차계획과(市)의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 탁 관리계약서」 제19조(근로약정 이행 등) 및 제20조(지도·감독)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계획과(市) 업무 대행자인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지도 감독권을 가지며, 지도 감독시 시정 또는 보안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임시 폐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번 감사기간 중 68개의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계약상대자 노동 관련 법령 준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6〕 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취업규칙 미 작성, 근로자 퇴직금 정산 부적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

3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제1항 1호내지7호

[표 6]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계약상대자 노동 관련 법령 미 준수 현황

건 명	권역명	수탁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남 2권역	[redacted]
취업규칙 미작성	강남 1권역	[redacted]
	강북 1권역	[redacted]
근로자 퇴직급 정산 부적정	강남 1권역	[redacted]
	강남 4권역	[redacted]
	강북 1권역	[redacted]

자료 : 서울시설공단제출 자료 재구성

그러함에도 공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차계획과 업무 대행자로서의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공단은 계약서상에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만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향후에는 수탁업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계약상대자의 계약 내용 이행 및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는 방안 마련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반복적인 계약내용 위반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서울시 업무 대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소홀 관련자에게는 귀 공단의 「인사규정」 제47조의3(주의·경고) 등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공영차고지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이하 “주차계획과”라고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매입하여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9조(관리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대행계약(기간 : 2017. 1. 1. ~ 2021. 12. 31.)”을 체결하여 공영차고지 30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사무를 공단이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은 차고지별 입주업체와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체결하여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업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표 1] 서울시설공단 차고지 관리 현황

구 분	계	건 설	매 입
개소	30	11	19
업체(대)	138(4,320대)	102(3,263대)	36(1,057대)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3호,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별표 1”,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제1항,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별표 19”에 따르면, 운수장비 정비[35] 면적이 200제곱미터[36] 이상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를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하며

3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별표1에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해서 정비시설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흡착·제거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대행 계약서” 제9조(대행자의 의무), 제10조(지도·감독), 허가서 제10조(시설물 관리의무) 등에 따르면,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공단은 업무대행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차계획과는 공단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내에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한 입주업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하고, 공단은 입주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며, 주차계획과에서는 공단이 대행 사무업무를 소홀히 하는지 평가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차고지 23개소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redacted]차고지 등 3개소는 기타수질오염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redacted]차고지 등 4개소는 유수분리시설 침전물이 2cm 이상 퇴적되어 있는 등 입주업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업무대행자인 공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차계획과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 위반 사항

36) 실제 정비 용도로 사용 중 인 면적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차고지		침전시설 침전물 퇴적 깊이(2㎝ 이상여부)	
차고지명	면적(㎡)	차고지명	퇴적깊이(㎝)
[redacted]차고지	243.32	[redacted]	20㎝
[redacted]차고지	209.52	[redacted]	15㎝
[redacted]차고지	240.62	[redacted]	8㎝
		[redacted]	6㎝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주차계획과와 공단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입주업체가 환경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미신고 및 침전시설물 관리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입주업체가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영차고지 내 가설건축물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공단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와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대행 계약서」[37]를 체결하여 2017. 1. 1. ~ 2021. 12. 31.까지 공영차고지[38] 시설물 운영·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표 1] 서울시설공단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 (2020.9. 기준)

구 분	총 계	서울시 건설 차고지	서울시 매입 차고지
개 소	30	11	19
업체 (대수)	138개 (4,320대)	102개 (3,263대)	36개 (1,057대)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공단 「공영차고지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버스업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한편 공단과 버스업체간 체결한 차고지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은 허가시설물(가설건축물 포함)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승인없이 허가시설물

37) 제4조(대행의범위 및 관리지원등) ①"서울시"는 "공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공단"은 대행사무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영차고지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영차고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3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이외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 허가조건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공영차고지관리규정」제12조(점검 및 위반시 조치)에 의하면 공단은 제반 준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불시에 점검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단은 공영차고지 유지관리계획 및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표2〕의 차고지내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 및 관리 상태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2] 가설건축물 관리 현황 (2020.10.기준)

구 분	버스업체	가설건축물(개소)	면적(㎡)
계	40	79	3,187.86
건설차고지	27	53	2,392.81
매입차고지	13	26	795.05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감사기간 중 공단과 합동점검한 결과 [redacted] 차고지 등 10개 버스 공영차고지에서 미신고(미허가) 〔붙임1〕과 같이 가설건축물(11개)이 발견되었음에도 공단에서는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공영차고지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4개소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1개소는 2020년에 설치되어 점검시기 미도래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6개소는 서울시에서 매입 이전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공단에서는 인수한 이후 설치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대행 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공단은 공영차고지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행사무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현재(2021.1.22.) 기준으로 11개소 중 5개소는

철거완료하고, 2개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4개소는 해당관청과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미신고(미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귀 공단의 「인사규정」 제47조의3(주의·경고) 등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1

가설건축물 미신고(미허가) 현황

연번	차고지명	현장사진	용도	면적 (m^2)	설치일	비고 (현재시정여부)
1	[redacted]		세차장 부속시설	6	2018. 10.	신고 완료 (2020. 12.)
2	[redacted]		주차공간	64	2012. 5.	철거 완료 (2020. 11.)
3	[redacted]		창고	2	2010. 4.	철거 완료 (2020. 11.)
4	[redacted]		창고	48, 38.5	2018. 7.	철거 완료 (2020. 11.)
			창고	8	2019. 6.	철거 완료 (2020. 11.)
5	[redacted]		휴게실	3	2020. 9.	철거 완료 (2020. 11.)
6	[redacted]		사무실	15	2020. 7	신고 완료 (2020. 12.)
7	[redacted]		창고	4	2000. 3.	미시정 (허가절차 협의 중)
8	[redacted]		창고	34	2010. 11.	미시정 (허가절차 협의 중)
9	[redacted]		폐수처리장 기계보호시설	57.3	2019. 8.	미시정 (허가절차 협의 중)
10	[redacted]		사무실	9,18	2017. 8.	미시정 (허가절차 협의 중)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 공사 품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공단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공단은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매년 유지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최근 4년간 서울시설공단 유지 · 보수 · 관리 공사 계약 현황 ('17년 ~ '20년)

연번	공사명	계약금액 (단위 : 백만 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1	○○○○○ ○○○○○ ○○○ ○○ 공사	322	2017. 3. 27. ~ 2017. 12. 28.	[redacted]
2	○○○○○ ○○○ ○○ 공사	227	2017. 11. 22. ~ 2017. 12. 22.	[redacted]
3	○○○○○ ○○○○○ ○○○ ○○ 공사	394	2018. 4. 2. ~ 2018. 12. 21.	[redacted]
4	○○○○○ ○○○○○ ○○○ ○○ 공사	394	2019. 3. 15.~ 2019. 12. 24.	[redacted]
5	○○○○○ ○○○○○ ○○○ ○○ 공사	426	2020. 2. 18. ~ 2020. 12. 31.	[redacted]
6	○○○○○ ○○○○○ ○○○ ○○ 공사	225	2017. 4. 10.~ 2017. 12. 15.	[redacted]
7	○○○○○ ○○○○○ ○○○ ○○ 공사	389	2018. 4. 11.~ 2018. 12. 18.	[redacted]
8	○○○○○ ○○○○○ ○○○ ○○ 공사	388	2019. 4. 19.~ 2019. 12. 31	[redacted]
9	○○○○○ ○○○○○ ○○○ ○○ 공사	294	2020. 4. 23.~ 2020. 12. 4.	[redacted]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항, 제2항,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대상 공사) 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설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항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적정, 조건부)하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자는 공사 계약 체결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벌칙) 제4호 및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발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2017년부터 〔표 2〕와 같이 2억 이상 전문공사 9건을 추진하면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공영주차장 디자인 개선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 ○○○○○ ○○○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품질시험계획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공단 품질시험계획 업무 처리 현황

연번	공사명	계약금 (단위 : 백만 원)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공단)	품질시험계획 수립여부 (계약상대자)	품질시험계획 검토 · 승인 여부 (공단)
1	○○○○○ ○○○○○ ○○○ ○○공사	322	공사금액에 미계상	수립	미승인
2	○○○○○ ○○○ ○○ 공사	227		미수립	미승인
3	○○○○○○ ○○○○○ ○○○ ○○ 공사	394		수립	미승인
4	○○○○○ ○○○○○ ○○○ ○○ 공사	394			승인
5	○○○○○ ○○○○○ ○○○ ○○ 공사	426			
6	○○○○○ ○○○○○ ○○○ ○○ 공사	225			
7	○○○○○ ○○○○○ ○○○ ○○ 공사	389			
8	○○○○○ ○○○○○ ○○○ ○○ 공사	388			
9	○○○○○ ○○○○○ ○○○ ○○ 공사	294			미승인

자료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위 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관리 공사들이 적합한 품질 및 공정 관리 등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 ○○○○○ ○○○ ○○ 공사 시 품질시험계획을 미수립하였는 데도 미시정한 사유는 공사지침서(시방서)에 따라 착공계 검토시 자재 선정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아 KS 규격, 시방서 및 내역서상 동등이상 자재임을

확인 후 승인 통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품질시험계획서는 자재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상태가 공종별 품질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재 검사 성적서 만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시공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고, 품질관리비 계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비를 미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아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귀 공단의 「인사규정」 제47조의3(주의·경고) 등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 및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이하 “주차계획과”라고 한다.)는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39]의설치 및 폐지) 및 제12조(노외주차장[40]의설치 등)에 따라 132개[41](노상68, 노외64)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고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따라 주차장별 관리수탁자[42]를 선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43]을 체결하고 위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의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포함)를 공단으로 하여금 2016. 11. 1. 부터 2021. 12. 31.까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정산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2017년부터 ‘○○○○○ ○○○○ ○○공사’ 외 4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완료하였다.

[표 1] 공영주차장 승강장치 보수공사

연번	공 사 명	도급비 (단위: 천 원)	공사기간	도급자
1	○○○○○ ○○○○ ○○공사	104,478	19. 7. 31. ~ 9. 8.	[redacted]

39)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가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0) 주차장법 제2조(정의)1호 나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1) 2020. 10. 30.기준

42) ‘관리수탁자’란?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3) 서울시↔공단 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16. 6. 28./ 서울시 공영주차장 대행협약서 체결 2016. 12. 30.

2	○○○○○ ○○○ ○○공사	322,894	17. 3. 28. ~ 12. 28.	[redacted]
3	○○○○○ ○○○ ○○공사	394,050	18. 4. 2. ~ 12. 21.	[redacted]
4	○○○ ○○○○○ ○○○ ○○○공사	113,532	18. 8. 30. ~ 11. 26.	[redacted]
5	○○○○○ ○○○ ○○공사	349,275	19. 3. 15. ~ 12. 24.	[redacted]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4] 제3조(적용범위) 및 제7조(사용기준) 제2항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 별표2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 ○○○○ ○○공사’ 외 4건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등 목적 외의 사용 여부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로인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조끼, 라바콘 및 라바콘 걸이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초과 등” 아래 〔표 2〕와 같이 1,787천 원을 과다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정산 내역

(단위: 원)

연번	공 사 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및 기타	합 계
1	○○○○○ ○○○○○ ○○○ ○○공사	353,580	119,420	473,000

44) 개정 2020. 1. 23. 고시 2020-63호

2	○○○○○ ○○○○○ ○○○ ○○공사	480,953	163,047	644,000
3	○○○○○ ○○○ ○○○○○ ○○○ ○○○공사	310,000	105,000	415,000
4	○○○○○ ○○○○○ ○○○ ○○공사	34,618	11,382	46,000
5	○○○○○ ○○○○○ ○○○○ ○○공사	156,000	53,000	209,000
합 계		1,335,151	451,849	1,787,000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미흡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외 1건을 아래 〔표 3〕과 같이 완료하였다.

[표 3]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외 1건

연번	공 사 명	도급비 (단위: 천 원)	공사기간	도급자
1	○○○○○ ○○○ ○○공사	322,894	17. 3. 28. ~ 12. 28.	[redacted]
2	○○○○○ ○○ ○○ 공사	172,127	19. 6. 20. ~ 9. 27.	[redacted]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아래 〔표 4〕와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도급 계약내역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45)]

45)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일반건설공사(을):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특수및기타건설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

공사종류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 공사
적용비율(%)	2.93	3.09	3.43	2.45	1.85

자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

그리고 공단의 위 공사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 ○○○ ○○공사' 외 1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안전관리비 901천 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그로인하여 안전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못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 5] 산업보건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내역

(단위: 원)

공 사 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공고문	계약내역서	차액	낙찰률
○○○○○ ○○○○○ ○○○ ○○공사	5,874,348	5,108,233	-766,115	86.9%
○○○○○ ○○○○○ ○○○○ 공사	1,124,839	989,309	-135,530	87.9%
합 계	6,999,187	6,097,542	-901,645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3. 보험료 과다 정산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 ○○○○ ○○공사'를 아래 〔표 6〕과 같이 완료하였다.

[표 6]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공 사 명	도급비 (단위: 천 원)	공사기간	도급자
○○○○○ ○○○○ ○○공사	105,596	19. 4. 1. ~ 5. 29.	[redacted]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험료(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사후정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 ○○○○○ ○○○○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개인 부담금까지 정산하였다.

그로인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1,405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7]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과다 정산 내역

(단위: 원)

공 사 명	보험료	제경비 및 기타	합 계
○○○○○ ○○○○○ ○○○○ ○○공사	1,048,190	356,810	1,405,000

자료 : 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공단에서는 앞으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를 공사 준공 시 관계서류에 맞게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수하고, 안전관리비도 기초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87천 원), 보험료(1,405천 원) 총 3,192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